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자료

2021

목차

제1편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 01

①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03
② 사업 개요	07
③ 사업 절차	08
④ 세부추진 절차	09
⑤ 등급관리·혜택	18
⑥ 우수사례 발표대회	18
⑦ 참고	19
⑧ 의견 수렴	21

제2편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절차 및 각 시기별 제출서류 25

①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절차	28
② [붙임1] 참여신청서	29
가. [첨부1 양식] 사업장 현황 조사표	30
나. [첨부2 양식] 참여 사업장 현황	31
다. [첨부3 양식] 세부 계획서	32
③ [붙임2] 추진결과	33
④ [붙임3] 평가지표 및 기준(안)	35
⑤ [참고] 안전보건 주요사항 안내	43

제1편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

- ①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 ② 사업 개요
- ③ 사업 절차
- ④ 세부추진 절차
- ⑤ 등급관리·혜택
- ⑥ 우수사례 발표대회
- ⑦ 참고
- ⑧ 의견 수렴

사업설명회

안전은 권리입니다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

2021.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I.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2021. 1. 21.(목)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주요 내용

- ❖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 ❖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 점검·감독 강화
- ❖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대폭 확대
- ❖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공개



I.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안전보건 계획 수립 · 이행지도 및 모니터링

- 상반기 안전보건 계획 수립 · 이행(산안법 제14조)* 지도 및 지속 모니터링
- * 대상 : 상시근로자 500이상 기업,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도급 · 위탁 · 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포함되도록 지도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와 가이드 보급
- 위험성 평가 제도개선 추진

○ 50인 미만 중소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기업별 밀착형 컨설팅 제공
-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
- 위험요인 개선 예방점검 · 감독 강화



I.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 점검 · 감독 강화

○ 건설업 및 추락 · 끼임 사고 다수 발생

- '20년 잠정 집계결과 '19년 대비 산재 사고사망자 27명 증가
- ※ ('18) 971명 → ('19) 855명 → ('20) 882명
- 업종으로는 건설업, 형태로는 추락, 끼임 사고가 높은 비중

○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감독

-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패트롤카 집중 투입
- ※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은 불시감독 실시
- 신고제 도입 : 고용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 누구든지 신고

○ 건설업 본사 관리 · 감독 강화

- 현장은 위험작업 시기 등 실시간 파악 후 적시 점검 · 감독



I.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산업재예방
안전보건공단



❖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한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 및 고용부 합동점검
- 지자체 안전보안관 활용
- 합동 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 민간산재예방기관 기술지도 강화

- 기술지도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 고위험현장은 패트를 점검·감독 연계
- 독립된 위치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추진
 - ※ 기술지도 계약주체 : 시공사 → 건설공사발주자
- 부실기관 제재 강화로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 유도



I.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산업재예방
안전보건공단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대폭 확대

○ 재정·용자지원 강화

- 안전투자혁신사업 :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공정 개선
 - ※ '21년 예산 : 5천 3백억원(재정지원-3,271억, 용자지원-2,000억)
-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 시급 5인 미만 사업장 최우선 지원
- 클린사업 : 7천개 건설현장에 시스템 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구성

-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지원
-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산재예방기관 등



I.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공개

○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통한 산재예방 활용

- 제조업 :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 및 발생원인 분석
- 건설업 : 공사 종류·공정별 위험요인, 재해형태별 발생원인 분석

○ 공개내용의 확대

- 감독현황, 위반사업장 사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



I.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공단 중점추진 방향

❖ 패트룰 현장점검 실시

○ 제조업 끼임 및 건설업 추락재해 발생 위험 현장·작업·기계설비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대상 : [제조업]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

[건설업] 120억원 미만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 점검방법 : 위험설비의 안전조치·비정형작업 시 작업절차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망사고 위험 시정

지시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등 관계자의 서명을 받고, 점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개선

결과(사진 등)를 공단으로 송부 조치

※ 개선결과 미제출시 지방관서에 행정조치 요청, 다만 기한 내 재정지원 신청 시 제출로 인정



I.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공단 중점추진 방향

❖ 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 대상
 - ①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中
 - 이동식크레인(2009년 9월 30일 이전 제작분)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2009년 6월 30일 이전 제작분)
 - 권동식 리프트
 - ② 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처리업 중심)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 지원내용 : 위험기계 교체 또는 노후공정 개선소요비용의 50%
- 지원방식 :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anto.kosha.or.kr>) 신청



II. 사업 개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주요 변경사항

- 사업물량 : 900개소 (200개소 증가)
- 현장기술지도 대상 확대 : 참여승인 모기업 전수 (전년도 50%에서 전수로 상향)
 - 모기업 별 협력업체 기술지도는 20% 내외로 수행
 - ※ 기술지도 대상을 제외한 80%는 패트를 점검 가능
- 평가위원회 대상 : 등급평가 대상사업장 전수
 - 전년도는 확인 기술지도 90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전수로 확대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 최근 3년 연속 A등급(상위10%) 사업장 혜택
 - 참여신청 심사, 개선계획서 제출, 현장기술지도 생략 가능

□ 사업 목적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한 협력업체를 위하여 모기업 주도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협력업체에 기술·재정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 관리능력 향상
-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62조(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에 따른 모기업의 의무이행과 사회적 책임에 근거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1 사업대상 선정 [고용부, 공단]

☐ 참여대상 : 50인 이상 모기업(사내협력 포함) 및 그 사내·외 협력업체

☐ 대상업종 : 전 업종*

* 다만, 건설업 및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대상 사업장 제외

☐ 우선선정 기준

- ✓ 협력업체 중대재해 발생, 사고 다발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모기업
- ✓ 전년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 ✓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기업
- ✓ '12~'20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모기업

* (선정기준 수립) 고용노동부 본부(정책과) → (사업장 선정)고용노동지청-공단 일선기관 협의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 협력업체 참여 대상

☐ 사내 협력업체 : 전체 참여

☐ 사외 협력업체 : 자율 참여

※ 정비·보수 및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등 고위험 작업을 하는 사외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

❖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사업장」 범위

- ✓ 공정안전보고서(PSM) 적용 관리대상물질(51종)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사용하여, PSM 비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
-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고독성(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78종) 제조·사용 사업장
- ✓ 그 밖의 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유해물질 제조·사용 사업장
(삼산화안티몬, 시안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등)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고독성(CMR) 물질(78종)

번호	화학물질명(한글)	화학물질명(영어)	CAS No.	번호	화학물질명(한글)	화학물질명(영어)	CAS No.
1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87-86-5	40	에틸렌이민	Ethylenimine	151-56-4
2	크롬광 및 합유제(알소성처리 경우)	Chromite ore processing(Chromate), as Cr	7440-47-3	41	2,3-에폭사-1-프로판올	2,3-Epoxy-1-propanol(Glycidol)	566-52-5
3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75-52-5	42	1,2-에폭시프로판	1,2-Epoxypropane	75-56-9
4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98-95-3	43	에피클로하이드린	Epichlorohydrin	106-89-8
5	p-니트로클로로벤젠	p-Nitrochloro benzene	100-00-5	44	요오드화메틸	Methyl iodide	74-88-4
6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25321-14-6	45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75-15-0
7	디메틸아닐린(이피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121-69-7	46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108-90-7
8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Dimethyl acetamide	127-19-5	4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1,2,2-Tetrachloroethane	79-34-5
9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68-12-2	48	1,1,2-트리클로로에탄	1,1,2-Trichloroethane	79-00-5
10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111-42-2	49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96-18-4
11	1,4-디옥산	1,4-Dioxane(Diethylene dioxide)	123-91-1	50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ofuran	109-99-9
12	디클로로메탄(메틸렌 클로라이드)	Dichloromethane(Methylene chloride)	75-09-2	51	톨루엔	Toluene(Toluol)	108-88-3
13	디히드로벤젠(히드록시퀴논)	Dihydroxybenzene(Hydroquinone)	123-31-9	52	톨루엔-2,4-다이아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TDI)	584-94-9
14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l(Methyl cellosolve)	109-86-4	53	톨루엔-2,6-다이아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1-08-7
15	메틸비스(클로로)디메틸아세트아미드	4,4'-Methylenebis(phenyl diisocyanate)	101-68-8	54	트리클로로메탄	Chloroform(Trichloromethane)	67-66-3
16	메틸이소부틸케톤	Methyl isobutyl ketone(Hexone)	105-10-1	55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
17	메틸클로라이드	Methyl chloride	74-87-3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페르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Perchloroethylene)	127-18-4
18	메틸 n-부틸케톤(2-헥사논)	Methyl n-butylketone(2-Hexanone)	591-78-6	57	페놀	Phenol	108-95-2
19	벤젠(중량비율 0.1% 이상)	Benzene	71-43-2	58	포름알데하이드(중량비율 0.1% 이상)	Formaldehyde	50-00-0
20	1,3-부타디엔(중량비율 0.1% 이상)	1,3-Butadiene	106-99-0	59	스토드ard 용매	Stoddard solvent	8052-41-3
21	1-부탄올(n-부틸 알코올)	1-Butanol(n-Butyl alcohol)	106-94-5	60	프로필렌이민	Propylene imine	75-55-8
22	2-브로모프로판(중량비율 0.3% 이상)	2-Bromopropane	75-26-3	61	피리딘	Pyridine	110-89-1
23	브롬화메틸	Methyl bromide	74-83-9	62	하이드라진	Hydrazine	302-01-2
24	비닐 아세테이트	Vinyl acetate	108-05-4	63	헥산(n-헥산)	n-Hexane	110-54-3
25	사염화탄소(중량비율 0.1% 이상)	Carbon tetrachloride(Tetrachloromethane)	56-23-5	64	황산디메틸	Dimethyl sulfate	77-79-1
26	스티렌	Styrene(Vinyl benzene, Phenylethylene)	100-42-5	65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107-06-2
27	시클로헥산	Cyclohexane	108-94-1	66	납 및 그 무기화합물(중량비율 0.3% 이상)	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7439-92-1
28	아닐린(이피노벤젠)과 그 동족체	Aniline & homologues	62-53-3	67	니켈 및 그 화합물(중량비율 0.1% 이상)	Nickel(Elemental)	7440-02-0
29	아세트알데하이드	Acetaldehyde	75-07-0	68	수은 및 그 화합물	Mercury(Alkyl compounds)	7439-97-6
30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107-13-1	69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13469-67-7
3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70	카드뮴 및 그 화합물(중량비율 0.1% 이상)	Cadmium and compounds, as Cd(Respirable fraction)	7440-43-9
32	알릴글리시딜 에테르(AGE)	Allylglycidyl ether(AGE)	106-92-3	71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Cobalt(Metal dust & fume)	7440-48-4
33	에틸벤젠	Ethyl benzene	100-41-4	72	오산화바나듐	Vanadium pentoxide(Respirable dust or fume)	1314-62-1
34	에틸아크릴레이트	Ethyl acrylate	140-88-5	73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7722-84-1
3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110-49-6	74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Trichloroacetic acid	76-03-9
36	2-에톡시에탄올	2-Ethoxyethanol(ethyl cellosolve)	110-80-5	75	황산(중량비율 0.1% 이상)	Sulfuric acid	7664-93-9
3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111-15-9	76	신화메틸렌(중량비율 0.1% 이상)	Ethylene oxide	75-21-8
38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EGBE	111-76-2	77	탄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39	에틸글리콜모노부틸아세테이트	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	112-07-2	78	염화메틸렌	Methylene chloride	75-09-2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3 프로그램 참여신청 [사업장 → 공단]

□ 제출기간: 3.2(화) ~ 3.12(금), 2주간

□ 제출처: 모기업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제출서류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 [첨부1] 사업장 현황 조사표
- [첨부2]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현황
 - * 사내 협력업체는 전체, 사외 협력업체 중 고위험작업 업체는 모두 참여
 -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 [첨부3]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 * 신규 참여사업장은 희망 시 작성방법 컨설팅 지원

[illegible]

[참여신청서]

[illegible]

[첨부1 : 현황 조사표]

[illegible]

[첨부2 : 참여 사업장 현황]

[illegible]

[첨부3 : 세부 계획서]

☐ 프로그램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운영 계획
- ✓ 참여대상 협력업체 명단(협력업체 자체선정계획 포함)
- ✓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계획
- ✓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 실시 계획·방법(위험성평가 인정, KOSHA-MS 인증 지원계획 포함)
- ✓ 위험성평가 결과 등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계획
- ✓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계획(대형마트, 백화점 등 고객응대사업장)
- ✓ 프로그램(활동) 평가 계획 등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4 세부계획 수립 방문 컨설팅 [공단 → 사업장]

- ☐ 대 상 : '21년 신규참여 사업장 중 희망 사업장
 - ☐ 기 간 : 3.2(화)~ 프로그램 심사 이전일(관할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
 - ☐ 컨설팅 내용

-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작성방법
- ✓ 기타 사항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5

프로그램 심사·승인 [심사위원회]

□ 심사·승인 : 3. 26(금) 까지

□ 심사위원회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외부전문가로 구성(5~8명)

□ 심사 항목

- ✓ 모기업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의지(비전, 인적·물적 추진계획, 방침 및 규정의 마련)
- ✓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산재취약사업장 모두 선정, 고위험작업 협력업체 전부 참여)
- ✓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책임자급을 포함하여 조직구성 및 사장단에 보고하는 체계 구축)
- ✓ 협력사업 계획의 효과성(적격 수급업체 선정, 고위험작업 작업허가 체계,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향상계획)
- ✓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협력업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활동계획과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 ✓ 협력사업 투자의 적정성(위험성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 ✓ 성과평가 계획의 적정성(계획대비 이행도 측정, 적용법규 준수 여부, 만족도 조사 등)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표

□ 사업장명 (모기업명):

평가항목	평가 지표(판단 기준)	관청
모기업의 공생협력 추진 의지	□ 사업장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에 의지가 있는가? ✓ 우수: 사업주가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과감한 인적·물적 투자 계획을 담고 있으며, 공생협력 원칙 등과 그 이행·확인의 내용을 포함한 방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통: 사업주가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미흡함 ✓ 미흡: 사업주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모기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 방침 및 규정이 미흡함	□ 우수 □ 보통 □ 미흡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 공생협력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선정하였나? ✓ 우수: 사내·외를 포함하여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산재취약 사업장을 모두 선정 ✓ 보통: 자체 선정기준이 없이 사내·외 협력업체를 선정 ✓ 미흡: 고위험 사업장을 누락하는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협력업체 중심으로만 선정 * 일반·보통, 유해화물 취급 제조·시설 등 고위험 사외 협력업체 포함 여부 확인	□ 우수 □ 보통 □ 미흡
협력단 구성 및 적정성	□ 협력단의 구성이 적정한가? ✓ 우수: 책임자급으로 구성하고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직을 구성 (외부전문가에 의한 협력업체 지원 포함)하고 활동 결과를 사장단에 보고하는 체계가 구축됨 ✓ 보통: 책임자급과 상급 이상으로 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조직(외부전문가)에 의한 협력업체 지원 포함) 구성이 미비함 ✓ 미흡: 안전관리부서 단위 수준으로만 구성 운영됨	□ 우수 □ 보통 □ 미흡
협력사업 계획의 효과성	□ 협력사업의 안전보건관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수립하였는가? ✓ 우수: 적격 수급업체(협력업체) 선정, 사고 시발 및 증상해 등 다발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체계, 각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한 구축 및 운영계획이 협력업체별 공정·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관리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수립됨(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위험성평가 인정 계획 포함) ✓ 보통: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 ✓ 미흡: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협력사업 중심으로 작성	□ 우수 □ 보통 □ 미흡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	□ 협력단의 공생협력 추진 활동 계획이 적극적인가? ✓ 우수: 계획발생 수준, 위험공정 등 업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활동(위험성평가·모니터링·평가 등) 계획과 협의회 정기적 개최 등 계획이 적극적임 ✓ 보통: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 ✓ 미흡: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활동 계획만 작성	□ 우수 □ 보통 □ 미흡
협력사업 투자의 적정성	□ 협력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정한지? ✓ 우수: 평가에 따른 협력업체별 또는 활동별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집행 계획 작성 ✓ 보통: 전체적인 예산계획은 있으나, 협력업체별 또는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은 없음 ✓ 미흡: 전체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없음	□ 우수 □ 보통 □ 미흡
프로그램 성과평가	□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 계획이 적정한지? ✓ 우수: 당초 계획대비 프로그램 성실 이행도 측정, 적용법규 준수 여부,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 포함 ✓ 보통: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 ✓ 미흡: 단순 계획검조 효과만 평가	□ 우수 □ 보통 □ 미흡
종합의견		

※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전 심사결과 '보통', '미흡'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한 후, 위원장이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판정'을 조정하거나 원안을 확정 하고, '종합의견'에는 '보통' 또는 '불승인' 결론 핵심내용을 기재

□ 심사기준

- 승 인(미흡 0개)

- 보 완(미흡 1개~3개)

* 10 일 이 내 계 획 서 를 보 완
하 여 다 시 제 출 → 공 단 은
검 토 후 승 인

- 불승인(미흡 4개 이상)

6 위험성평가 실시 [모기업, 협력업체]

□ 위험성평가 추진 주체

- ✓ 위험성평가는 모기업(원청)·협력업체(하청)가 공동으로 수행
- ✓ 모기업·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간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공용의 장소, 혼재 작업 구역 등은 원청이 주도적으로 추진
- ✓ 외주업체에 의한 정비·보수작업 등과 같이 추진 주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청·외주업체 또는 해당 공정 하청·외주업체가 공동 추진
- ✓ 모기업은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별 유해 위험요인 개선대책 수립하고 개선계획서 제출

7 개선계획서 제출 [사업장 → 공단]

□ 제출기간 : 5. 21(금) 까지

□ 제출처 : 모기업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

□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시 개요(협력업체별 실시 일정, 방법 등 실시현황)
- ✓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개선(감소) 대책과 그 일정
* 보수·정비 작업, 개·보수공사 등 비정형 작업을 포함하여 실시
- ✓ 산업현장 3대 안전수칙* 준수, 질식 근절방안 이행계획 등
*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상시점검
- ✓ 위험성 개선(감소)를 위한 투자 예산(예산을 부담하는 주체 명시)
- ✓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지원계획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8 현장 기술지도 [공단 → 사업장]

□ 지도기간 : 6월~8월

□ 지도대상 : 참여 모기업의 100%

- ✓ 모기업별 협력업체는 20% 내외로 컨설팅 수행
- ✓ 모기업별 컨설팅 대상 협력업체를 제외한 80% 내로 패트를 수행 가능

□ 지도내용(제출된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기술지도 실시)

- ✓ 공생협력 프로그램 취지 설명 및 혜택 안내
- ✓ 모기업 및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역할 구분 지도
- ✓ 일부 공정 위험성평가 시범 평가 등 컨설팅 실시
- ✓ KOSHA-MS 및 위험성평가 등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도
- ✓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운영 지도
- ✓ 사고사망 다발 5대 작업·기계 및 장소 중점지도 및 핵심 요구조치*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8 현장 기술지도 [공단 → 사업장]

※ 중점 지도대상 및 핵심 요구조치(사고사망 다발 5대 작업·기계 및 장소)

(공통조치) 사전 위험성평가 ◊ 정비, 보수를 포함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이행, 고위험은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① 보수, 정비 작업, 개, 보수공사 등 비정형작업

- ◊ 적격 수급업체(협력업체) 선정체계*, 작업허가제(작업 전 ~ 시운전단계) 구축 및 운영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2019-안전-426)」참조

② <충돌> 지게차

- ◊ 자격자 조종, 안전작업계획서(안전통로 확보, 출입금지구역 구획 등) 작성 및 이행

③ <끼임> 성형기, 로봇, 적재기, 컨베이어, 분쇄, 파쇄기, 혼합, 교반기, 다이캐스팅기 등

- ◊ (정비, 보수 작업) 전원차단, 전원 투입부에 잠금장치 또는 꼬리표 설치, (정상작업) 방호시설, 안전장치 구비

④ <추락> 비계, 사다리 사용작업

- ◊ 사다리 목적 외 사용금지, 적정 작업대, 설비, 보호구 사용

⑤ <질식, 화재, 폭발> 밀폐공간 도장, 용접, 용단작업, 하수처리시설, 맨홀, 화학설비, 반응기 내부작업, 콘크리트 양생작업

-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및 출입허가제 이행, 환기, 가스농도측정 설비 구비, 활용 등

9 추진실적 제출 [사업장 → 공단]

- ☐ 제출 기간 : 9월말까지
- ☐ 제 출 처 :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
- ☐ 제 출 내 용

- ✓ 모기업 최고경영자의 추진의지 및 노력, 공생협력 규정
- ✓ 적격 수급업체 선정, 사고사망 및 중상해 다발 등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등 방침규정의 수립 및 전달체계
- ✓ 공생협력단 조직, 활동계획 및 실적, 위험성평가 수행조직 및 방법, 예산책정 등(* 정비보수, 공사 등 고위험작업 업체 선정 여부 등)
- ✓ 위험성평가 계획, 교육실적, 감소대책에 따른 개선내용
- ✓ 공생협력 프로그램 계획대비 이행 실적
- ✓ 사망사고 근절 분위기 조성 실적 (사고사망예방 슬로건 게시, 매월 4·4·4 안전점검 실시 등)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실적
- ✓ 참여 협력업체의 만족도 조사(대표자 및 근로자) 결과
- ✓ 자체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10 확인 기술지도 [공단 → 사업장]

- ☐ 지도 기간 : 10월 ~ 11월
- ☐ 지도 대상 : '21년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전체(100%)
- ☐ 지도(모니터링) 내용

- ✓ 현장 기술지도 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여부 확인
- ✓ 개선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
- ✓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평가 및 강평 실시
- ✓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등

☐ 결과

- ✓ 현장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은 전수 평가위원회에 상정

11 등급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기간** : 11월말~12월 10일(금)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대상** : 현장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확인기술지도보고서
- **등급구분** : 평가점수에 따라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점 이상~90점 미만), C등급(70점 미만)으로 구분
- **평가 지표 및 기준(안)** ※ 평가 지표 및 기준은 의견수렴 후 3월 말에 확정하여 일선기관에 시달

[모기업 부문] 10점

- ✓ 공생협력 추진의지(10%)

[모기업, 협력업체 공통 부문] 64점

-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21%)
-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26%)
- ✓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17%)

[협력업체 부문] 26점 + [30점 감점]

- ✓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16%)
 - ✓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10%)
- ※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30점 감점

세부 평가지표 및 기준(안)

- **공생협력 추진의지 (10%)**
 -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수준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21%)**
 - 공생협력 방침·규정의 수립·시행, 방침의 전달·이행확인 체계, 적격 수급업체 선정 체계, 고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체계
 -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 ✓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 ✓ 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이행
 - 공생협력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26%)

● 위험성평가 계획(P)

- ✓ 위험성평가 계획단계의 이행

● 위험성평가 이행(D)

- ✓ 위험성평가관련 교육 실시 여부
-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 위험성평가 이행 확인(C)

● 지속적 개선(A)

● 기록·관리



IV. 세부추진 절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17%)

- 공생협력 프로그램 계획 대비 이행도
- 도급관련 법규의 준수(산안법 제58조, 제64조, 제72조 등)
-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축 노력정도
- 만족도 조사 및 환류

- ✓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26%)

●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 참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

● 재해발생 수준

- ✓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 재해수준
- ✓ 참여 협력업체의 사고사망 발생 여부 (감점사항)
※ 사고사망 발생 시 최대 30점 감점

V. 등급관리 · 혜택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평가등급	평가등급별 혜택	적용 시기	적용 대상	
			모기업	협력업체
A등급 (상위 10%)	정기감독 일부 유예* 및 연기요청권(90일) 정부포상 우대 KOSHA 18001 및 KOSHA-MS 사후. 연장심사비 1/2감면 * 자체감독 대상 선정 시 유예 * 단, 대형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물의 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 대상에 포함	참여 다음년도	○	○
A등급	정부포상(산재예방 유공) 우대 KOSHA 18001 및 KOSHA-MS 사후. 연장심사비 1/2감면* * KOSHA 18001 및 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별표5 참조	참여 다음년도	○	○
모든 등급	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지원 (50인 미만) * KOSHA-MS 컨설팅비용 지원업무 처리지침 제7조 참조(지침 제200호)	수시	×	○
	KOSHA-MS 실태심사비 면제	참여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참여 승인 전까지)	×	○
	클린사업 재정 우선지원 산재예방시설 용자 우선지원	참여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	○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혜택 부여(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용 100% 적용 - 보증요율 02%p 감면	참여 다음년도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 → 100억)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판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 예정	참여 다음년도	○	○

※ 비교 : 절대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90점 미만 ~ 80점 이상은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

VI.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발표대회 개요

- 개최시기 :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 시
- 장 소 : COEX(서울)
- 참가대상 :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모기업)
- 시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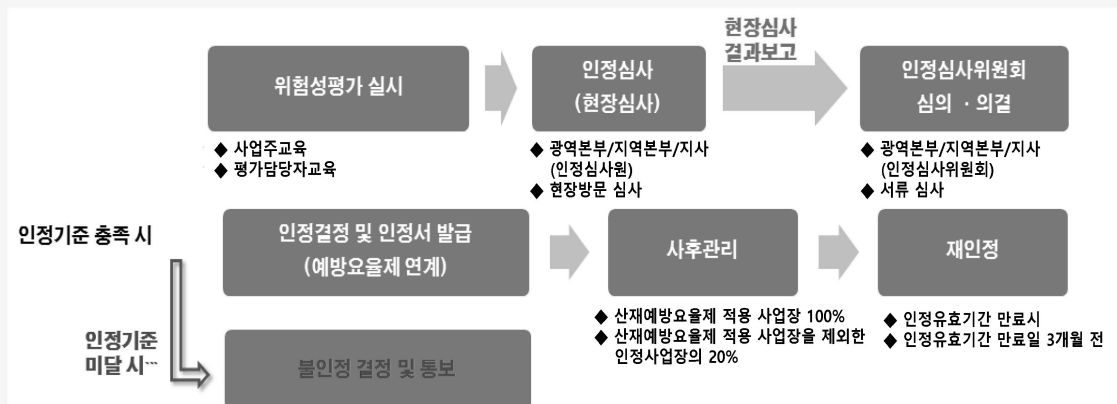
구 분	훈 격	사업장수	시상내역
대 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0명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최우수상	공단 이사장상	0명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	공단 이사장상	0명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시상계획(사업장 수 등)은 추후 발표대회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대회 세부일정 확정 시,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

□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 대상 : 상시 근로자수 100명[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사업장
- 신청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 업무처리절차



□ 산재예방요율제

- 개념 : 안전보건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인하
-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50명 미만 사업장(보험료 징수법)
*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은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 합산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여부 확인
- 적용방법
 - ✓ 보험료 할인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근로시간 단축 10%(‘21.6.30.까지)
※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 적용하고 근로시간 단축 인정 시 합산하여 적용
 -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 ✓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
- 인정취소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부)
- 업무처리절차

산재예방요율의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보험요율 반영(근로복지공단)

※ 반드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번호로 신청(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전산입력 및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불가)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제도

제출대상

다음의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보유사업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

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제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참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제도

제출 및 안내 문의처

[제 출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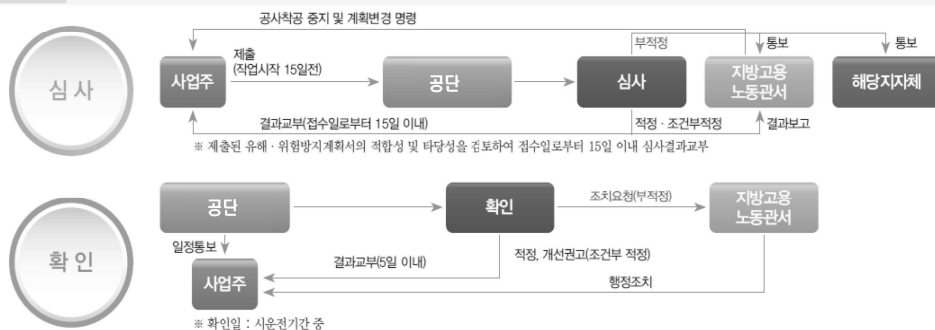
[제출서류]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시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안내문의] 공단 각 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안내

심사·확인 절차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안)

● A.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의지

1. 사회적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10	5	0

- ① 우수(10):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유해위험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 '협력업체의 지원', '협력체계', '리스크 관리비용을 전가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규정 등에 포함·보고*하고, 도급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협력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전달
- ② 보통 (5): ①과 같으나, 협력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전달하지 않음
- ③ 미흡 (0): 계획·규정에 포함된 내용이 없고, 이사회·위원회·협의체에도 미보고

*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 및 이사회에 보고·승인(법 14조)

④ 법 시행령 별표 9 해당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법 24조)

④ 법 시행규칙 별표 2 해당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법 25조)

④ 도급 사업장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보고(법 64조)

● 수정내용 요약

법 개정사항을 포함하도록 고도화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안)

●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1. 방침·규정의 수립·전달·확인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모기업 안전보건 방침의 전달·이행확인 체계	2	1	0

- ① 우수(2): 모기업의 안전보건 방침을 모든 협력업체(관계수급인)에 전달 및 이행·확인하는 체계가 규정되어 운영됨
- ② 보통(1): 전달·확인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모든 협력업체(관계수급인)에 전달하고 이행·확인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운영됨
- ③ 미흡(0): 전달·이행확인토록 하는 규정이 없고, 협력업체에 대한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음

● 수정내용 요약

모기업 주도의 안전보건 방침 확인 체계 구축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안)**

●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2. 공생협력단 구성·활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4	2	0

- ① 우수(4): 책임자급으로 협력단을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후 본사 사장단에 보고
- ② 보통(2): 책임자급으로 협력단을 구성하고 활동계획은 수립하였으나 모니터링 활동이 부족
- ③ 미흡(0): 안전보건관리부서 단위 수준으로만 협력단을 구성·운영하고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활동 계획만 작성

● **수정내용 요약**

유사내용을 통합하여 평가지표 간소화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안)**

● **C.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1. 계획(P)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6	3	0

- ① 우수(6):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또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험성평가 조직(현장근로자를 포함)을 구성하여 대상 공정 및 작업 분류,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운영이 적절함
- ② 보통(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조직 구성을 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분류를 일부 누락
- ③ 미흡(0):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조직 구성, 대상 공정 및 작업 분류 중 1가지 이상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미흡함

● **수정내용 요약**

유사내용을 통합하여 평가지표 간소화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안)

● C.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1. 이행(D)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6	3	0

- ① 우수(6): 건설물·설비·원재료·물질·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누락 없이 파악, 가능성과 중대성 추정,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② 보통(3):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일부 누락하거나 위험성 추정·결정이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음
- ③ 미흡(0): 위험성추정·결정을 하지 않음

● 수정내용 요약

유사내용을 통합하여 평가지표 간소화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안)

●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결과

1. 만족도 조사 및 환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4	2	0

- ① 우수(4): 협력업체가 대표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수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만족도 조사(3) 및 조사 결과 분석치를 제시(1)
- ② 보통(2): 협력업체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필수 조사내용 중, 일부를 누락
- ③ 미흡(0):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없음

* 필수 조사내용: ❶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❷ 위험성평가 지원 만족도, ❸ 유해위험요인 개선지원 만족도 및 ❶~❸의 불만족 요인 조사

● 수정내용 요약

유사내용을 통합하여 평가지표 간소화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안)

● E.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

1.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참여협력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	16	12	8	4	0

- ① 우수(16): 참여 협력업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이 40%이상
(12): 참여 협력업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이 30%이상 40%미만
- ② 보통(8): 참여 협력업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이 20%이상 30%미만
(4): 참여 협력업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이 10%이상 20%미만
- ③ 미흡(0): 참여 협력업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이 10%미만

* KOSHA-MS(18001), ISO45001

** 비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협력업체 수 ÷ 당해연도 공생참여 협력업체 수×100

(※단, 이전연도에 이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아 당해연도 11월 30일 기준 유지중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산정)

● 수정내용 요약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위험성평가 획득비율로 평가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안)

● E.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

1.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 재해수준	10	5	0

- ① 우수(10): 참여모기업 대비 협력업체의 재해율이 80% 미만이거나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해가 없는 경우
- ② 보통(5): 참여모기업 대비 협력업체의 재해율이 80% 이상 110% 미만이거나 재해가 미발생한 모기업의 협력업체 재해율이 0.3미만인 경우
- ③ 미흡(0): 참여모기업 대비 협력업체의 재해율이 110% 이상이거나 재해가 미발생한 모기업의 협력업체 재해율이 0.3이상인 경우

* (협력업체 재해율 / 모기업 재해율) × 100

※ 단, 우수보통에서 모기업 재해율이 모기업이 속한 대업종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할 경우 취득점수에 4점을 감점

● 수정내용 요약

재해수준을 재해자수가 아닌 재해율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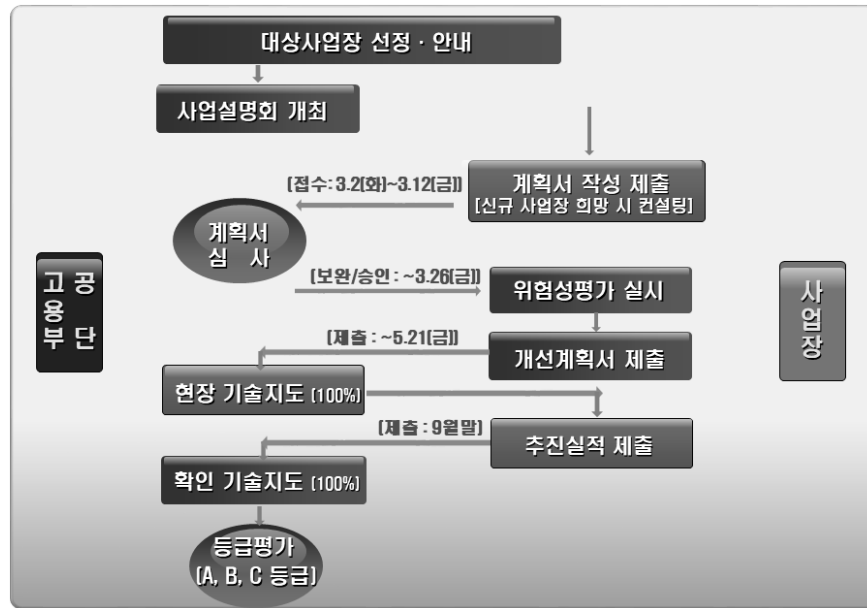
제2편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절차 및 각 시기별 제출서류

- ①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절차
- ② [붙임1] 참여신청서
 - 가. [첨부1 양식] 사업장 현황 조사표
 - 나. [첨부2 양식] 참여 사업장 현황
 - 다. [첨부3 양식] 세부 계획서
- ③ [붙임2] 추진결과
- ④ [붙임3] 평가지표 및 기준
- ⑤ [참고] 안전보건 주요사항 안내

메모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절차



① 사업설명회 개최(모기업 소재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담당자)

②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제출('21.3.2(화) ~ 3.12(금)_모기업)

☞ [첨부 1양식] 사업장 현황 조사표 1부

[첨부 2양식]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현황 1부

[첨부 3양식]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1부

③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계획서 제출('21.5.21(금)까지_모기업)

-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시 개요(협력업체별 실시 일정, 방법 등 실시현황)
- ✓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개선(감소) 대책과 그 일정
* 보수·정비 작업, 개·보수공사 등 비정형 작업을 포함하여 실시
- ✓ 산업현장 3대 안전수칙 준수, 질식 근절방안 이행계획 등
- ✓ 위험성 개선(감소)를 위한 투자 예산(예산을 부담하는 주체 명시)
- ✓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지원계획

④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실적 제출('21.9월 말까지_모기업)

- ✓ 모기업 최고경영자의 추진의지 및 노력, 공생협력 규정
- ✓ 적격 수급업체 선정, 사고사망 및 중상해 다발 등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등 방침규정의 수립 및 전달체계
- ✓ 공생협력단 조직, 활동계획 및 실적, 위험성평가수행조직 및 방법, 예산책정 등(* 정비보수, 공사 등 고위험작업업체 선정 여부 등)
- ✓ 위험성평가 계획, 교육실적, 감소대책에 따른 개선내용
- ✓ 공생협력 프로그램 계획대비 이행 실적
- ✓ 사망사고 근절 분위기 조성 실적 (사고사망예방 슬로건 게시, 매월 444 안전점검 실시 등)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실적
- ✓ 참여 협력업체의 만족도 조사(대표자 및 근로자) 결과
- ✓ 자체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평가지표 및 기준(안)』 (붙임 3)

※ 세부 평가지표는 3월 의견수렴 후 확정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 - - -)
협력업체 참여현황	사내 : 개 소(명) 사외 : 개 소(명)		근로자수(원청)	명
주요 생 산 품			업 종	
소재지	□□□□□			
공생협력 프로그램 담당자	부서명 (직책)	()	성명	
	전화번호 (Fax)	(- - - -)	휴대폰번호 (e-mail)	(- - - -)
첨부서류	1. 사업장 현황 조사표 1부. 2.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현황 1부. 3.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1부.			

우리 사업장은 2021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불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협력업체 사업주	(연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안전보건 공생협력』과 관련하여 귀 안전보건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아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개인정보를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추진 과정의 각종 정보 및 일정의 통지, 사업장 지원, 혜택의 제공 등에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사업장식별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관리번호, 소재지 등

▶ 개인정보활용목적 :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한 SMS를 이용한 정보 및 안내 등 사업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활용

성명(대표자 본인) : 서명

서명

공생협력 담당자 : 서명

서명

《첨부 1》

사업장 현황 조사표

■ 일반현황

모기업명			주요생산품 (매출액)			
모기업 근로자수	명 (교대작업 : ☐ 없음 ☐ 있음)					
협력업체	사내	개사	명 (교대작업 : ☐ 없음 ☐ 있음)			
	사외	개사	명			
안전관리자	☐ 선임(안전, 보건) ☐ 대행(안전, 보건) ☐ 해당 없음					
시스템인증(취득년도)	☐ KOSHA 18001(), ☐ KOSHA MS(), ☐ OHSAS 18001(), ☐ ISO45001(), ☐ 위험성평가(), ☐ 기타 ()					
적격 수급업체 선정 체계	☐ 없음 ☐ 있음		공공기관 여부	☐ 공공기관 ☐ 해당없음		
고위험 안전작업허가 체계(종류)	☐ 없음 ☐ 있음()					
재해현황 (발생일 기준)	구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모기업	사고재해자수				
		사고사망자수				
	협력업체	사고재해자수				
		사고사망자수				
사망사고 내 용	- -					

■ 주요공정 및 유해 · 위험성



공 정 명	주 작업내용	유해 및 위험설비 (중 요 대 상)	잠재위험성 (협착 · 충돌 · 전도 · 감전 등)

※ 공정이 복잡한 경우는 주요 공정에 한하여 간략히 작성

《침부 2》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현황

※ 엑셀 양식으로 작성

[illegible]

《첨부 3》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1. 신청 사업장명

신청서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2. 공생협력 사업계획 개요

기업 최고 책임자(CEO)의 정책목표 및 의지, 추진 사업, 인적·물적 투자계획 등

3.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및 운영계획

구성인원(소속, 직책, 자격, 성명), 회의·활동일정 등

4.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계획

적격 수급업체 선정, 사고 사망 및 중상해 등 고위험작업허가 등 체계 구축·운영 계획

5.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시(모기업 합동) 계획

협력업체와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협력업체별 일정 포함)

6. 협력업체 협력·지원 계획

협력단 운영·활동 및 협력·지원 내용 및 일정 등(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정 지원 계획 포함)

※ 추후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세부 개선계획(위험성 감소 계획)은 5월에 공단 제출

7. 산업현장 사망사고 근절노력 준수계획

「4·4·4 안전점검」, 3대 안전수칙 준수 질식 근절 슬로건 게시 계획 등 실행계획

8.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계획(대형마트, 백화점 등 고객응대사업장에 한함)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를 위한 인력, 예산, 시설, 조직문화 등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업무 담당 조직 및 사내인력(또는 사외) 존재 (보건관리자, 심리상담사 등)

- 감정노동에 대한 피로 해소를 위한 시설의 존재(휴게실, 건강관리실, 체육시설 등)

-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감정노동 관리 교육 및 대처방법 자료배포 등)

9. 성과평가 계획

프로그램 이행도, 도급사업 법규준수,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등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결과

[사업장 작성, 9월말까지 제출]

1. 모기업 현황

사업장명		근로자수	
소재지		대표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매출액	백만원
전화번호 (FAX)		생산물	
협력업체 현황	사내: 개소(명) 사외: 개소(명) 총: 개소(명)	참여 협력업체	사내: 개소(명) 사외: 개소(명) 총: 개소(명)

2.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현황 (엑셀로 작성)

연번	신규 여부	사업장 관리 번호	사업장 개시 번호	사업장 명	소재지	산재 보험 종업 종	근로 자수	협력 형태	공기업 여부	협력 차수	업무 내용	적격 수급 업체 선정 여부	고위험 작업 허가 체계 여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인증/ 위험성평가 인정	사고 사망자수 (1~9월 발생)				중상해 재해자수 (1~9월 발생)				기타사항
															'21 년	'20 년	'19 년	'18 년	'21 년	'20 년	'19 년	'18 년	
				모기업 명			0000	모기 업	○	모기 업	-	×	○	KOSHA180 01('18년)	0	0	0	0	0	0	0	0	
1	신규			협력 업체명				사내	×	1차	장비 보수			위험성평가('19년)									7월참여 중단(계 약종료)
2	기존							사내	×	1차	청소			kosha									
3								사외		1차													
...								사외		2차													

3. 협력업체 지원현황

모기업 사업장명	협력단 회의개최 횟수	기술지원		교육지원		자료지원		재정지원		시스템/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수	기타 협력 지원
		사업장수	횟수	사업장수	횟수	사업장수	횟수	사업장수	횟수		

3. 추진실적 (목표 대비 달성도, 계획의 이행도 등을 알 수 있게 기술)

가. 사회적 책임

- 모기업 최고경영자의 공생협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나. 방침·규정의 수립 및 전달체계

- 안전보건 공생협력규장, 적격 수급업체 선정, 사고사망 및 중상해 등 다발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원청 안전보건지원 방침의 전달·확인 등에 관한 규정·체계 마련 및 운영 실적

다. 인적자원 및 수행조직

- 공생협력단 구성 조직·체계 및 실적
※ 정비·보수, 공사 등 고위험작업 업체 선정 여부 등
- 협력단 활동계획 및 실적(협력계획 및 회의개최 시기 등)
- 위험성평가 수행조직 및 방법(현장근로자 참여 현황 등)
- 공생협력사업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라. 위험성 평가 (모기업·협력업체가 합동 추진)

- 위험성평가 계획 및 시행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매뉴얼) 제정 및 교육실시
- 위험성평가 결과

마. 감소대책

- 감소대책
- 이행결과
- 개선 후 위험성 재평가 실시 결과

바. 결과

- 프로그램 계획대비 이행실적(인적, 물적, 예산) 및 최종 성과평가 결과
- 법적사항 준수 정도
- 사망사고 근절 분위기 조성 (「4·4 안전점검」, 3대 안전수칙 준수·질식 근절 슬로건 게시 등) 실적
-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참여·만족도 조사 및 환류
- 자체평가 결과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지원 실적
- 최근 3년 동기대비 당해년도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사고사망, 중상해 재해(근로손실 90일 이상) 발생 현황
-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중상해재해율(근로손실 90일 이상) 등 안전보건격차 완화정도

사. 향후 계획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안)

1. 총 괄

구 분		배점	평가 득점
합 계		100	
모기업 부문	A. 공생협력 추진의지	10	
모기업 · 협력업체 공통 부문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21	
	C.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26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	17	
협력업체 부문	E.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	26	

2. 세부 평가지표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모기업	A. 공생협력 추진의지 (모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만점 부여 가능)		10
	1. 사회적 책임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10
모기업 · 협력업체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21
	1. 방침 · 규정의 수립 · 전달 · 확인 체계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방침 · 규정의 수립·시행	2
		2. 모기업 안전보건 방침의 전달 · 이행확인 체계	2
		3. 적격 수급업체 선정 체계	3
		4. 고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체계	3
	2. 공생협력단 구성 · 활동	1.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3
		2. 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4
		3.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 · 이행	2
	3. 예산 편성 · 집행 적정성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2
	C.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만점 부여 가능)		26
	1. 계획 (P)	1.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6
	2. 이행 (D)	1. 위험성평가관련 교육 실시 여부	2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6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6
	3. 이행 확인 (C)	1. 개선활동 및 이행 여부 확인	3
	4. 지속적 개선 (A)	1. 수시 · 정기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	2
	5. 기록 및 관리	1.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유지 · 관리	1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		17
	1. 계획대비 이행도	1. 당초 계획대비 이행 정도	3
	2. 도급관련 법규의 준수	1. 협업체 구성 · 운영, 합동 · 순회 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법규 준수 정도	2
	3.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축	1.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축 노력정도	5
	4. 만족도 조사 및 환류	1.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4
		2.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3
협력업체	E.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		26
	1.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 참여협력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	16
	2.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	1.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 재해수준 2. 참여 협력업체의 당해년도 사고사망 발생 여부 (감점)	10 산식적용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평가지표 및 기준(안)

A~D 항목(E 항목 제외) 중 평가기준에 비해 평가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어 중간점수 부여 필요시 각 항목 배점의 80%(우수-보통) 또는 30%(보통-미흡) 수준의 점수를 부여

A. 공생협력 추진의지 [모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만점 부여 가능]

1. 사회적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10	5	0

① 우수(10):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유해위험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 ‘협력업체의 지원’, ‘협력체계’, ‘리스크 관리비용을 전가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규정 등에 포함·보고*하고**, 도급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협력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전달

② 보통 (5): ①과 같으나, **협력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전달하지 않음

③ 미흡 (0): **계획·규정에** 포함된 내용이 없고, **이사회·위원회·협의체에도 미보고**

* ㉞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 및 이사회에 보고·승인(법 14조)
 ㉞ 법 시행령 별표 9 해당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법 24조)
 ㉞ 법 시행규칙 별표 2 해당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법 25조)
 ㉞ 도급 사업장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보고(법 64조)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1. 방침·규정의 수립·전달·확인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방침·규정*의 수립·시행	2	1	0

① 우수(2): 모기업의 규정 또는 방침에 ‘공생협력 원칙’, ‘공생협력단 및 수행조직’, ‘위험성평가’, ‘프로그램평가’, ‘개선계획의 이행’ 등의 5개 내용이 포함

② 보통(1): 일부 항목(2개 이내)의 누락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0): 규정이 없거나, 규정은 있으나 위의 내용이 결여됨

* **규정의 형태(안전보건관리규정, 공생협력규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매뉴얼·절차서·지침서 등에 제한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모기업 안전보건 방침의 전달·이행확인 체계	2	1	0

① 우수(2): 모기업의 안전보건 방침을 **모든** 협력업체(**관계수급인**)에 전달 **및** 이행·확인하는 체계가 **규정되어 운영됨**

② 보통(1): **전달·확인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모든** 협력업체(**관계수급인**)에 **전달하고** 이행·확인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운영됨

③ 미흡(0): 전달이행확인토록 하는 규정이 없고, 협력업체에 대한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3. 적격 수급업체 선정 체계	3	1.5	0

① 우수(3): 수급업체(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기준이 있고 사전 ‘공지’ 하고 있으며 평가 및 환류를 하고 있음

② 보통(1.5): ‘안전수준평가’ 기준은 있으나 계획대로 잘 운영되지 않음

③ 미흡(0): ‘안전수준평가’ 기준이 없음

※ 사업장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 예시**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2. 계획수립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원·하청 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4. 고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체계	3	1.5	0

① 우수(3): ‘안전작업허가’ 지침이 있고 허가서 ‘발급’, ‘승인’ 및 작업을 ‘입회’ 하고 있으며, 작업 후에는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였던 허가서를 ‘회수’ 및 ‘보존’ 하고 있음

※ 고위험작업이 없는 사업장은 ‘작업지침’, ‘작업계획’ 등 안전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여 평가

② 보통(1.5): ‘안전작업허가’ 지침은 있으나 운영 단계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0): 지침 또는 허가서가 없음

* 사업계획 추진지침의 현장 기술지도 수행사항 중, 사고사망 다발 5대 고위험 작업·기계설비 및 장소 참조

2. 공생협력단 구성·활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3	1.5	0

- ① 우수(3): 사내협력업체는 모두 참여, 사외협력업체는 고위험작업 업체 등에 대한 자체 선정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모두 참여
- ② 보통(1.5): 사내협력업체는 모두 참여, 사외협력업체는 선정기준은 있으나 일부 참여 누락
- ③ 미흡(0): 사내협력업체가 일부 참여 누락, 사외협력업체 선정기준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은 고위험작업 업체가 있음

* 고위험작업 협력업체 예시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작업, 정비·보수작업 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4	2	0

- ① 우수(4): 책임자급으로 **협력단을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 월 1회 이상 회의개최 후 본사 사장단에 보고**
- ② 보통(2): 책임자급으로 **협력단을 구성하고 활동계획은 수립하였으나 모니터링 활동이 부족**
- ③ 미흡(0): 안전보건관리부서 단위 수준으로만 **협력단을 구성·운영하고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활동 계획만 작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4.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이행	2	1	0

- ① 우수(2):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음
- ② 보통(1): 위험성평가 계획은 있으나 협력업체별 또는 위험요인별 구체성이 결여
- ③ 미흡(0):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협력사업 중심으로 작성

3. 예산 편성·집행 적정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2	1	0

- ① 우수(2):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안에 대해 업체별 또는 항목별 구체적 계획 수립
- ② 보통(1): 예산계획은 있으나, 협력업체별 또는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책정은 결여
- ③ 미흡(0):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계획이 없음

C.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만점 부여 가능]

1. 계 획 (P)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6	3	0

- ① 우수(6):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또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험성평가 조직(현장근로자를 포함)을 구성하여 대상 공정 및 작업 분류,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운영이 적절함**
- ② 보통(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조직 구성을 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분류를 일부 누락**
- ③ 미흡(0):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조직 구성, 대상 공정 및 작업 분류 중 1가지 이상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미흡함**

2. 이 행 (D)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위험성평가관련 교육 실시 여부	2	1	0

- ① 우수(2): 위험성평가에 대해 관리감독자 및 현장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적이 있음
 ② 보통(1): 위험성평가에 대해 관리감독자 교육만 실시
 ③ 미흡(0): 위험성평가에 대해 관리감독자 및 현장근로자에 대한 교육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6	3	0

- ① 우수(6): 건설물·설비·원재료·물질·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누락 없이 파악, 가능성과 중대성 추정,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② 보통(3):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일부 누락하거나 위험성 추정·결정이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음
 ③ 미흡(0): 위험성추정·결정을 하지 않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6	3	0

- ① 우수(6): 우선순위별 감소계획(담당자, 개선완료일 포함)을 수립, 감소대책이 적정함
 ② 보통(3): 우선순위별 감소계획이 아닌 임의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소대책이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0): 개선계획 수립이 없거나, 개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3. 이행 확인 (C)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개선활동 및 이행 여부 확인	3	1.5	0

- ① 우수(3): 개선활동 및 이행 여부 확인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② 보통(1.5): 개선활동 및 이행 여부 확인이 계획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실시됨
 ③ 미흡(0): 개선활동 및 이행 여부 확인절차가 없음

4. 지속적 개선 (A)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수시·정기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	2	1	0

- ① 우수(2): 수시·정기평가 계획이 실시계획서(매뉴얼)에 반영이 되어있고 계획대로 평가가 이루어짐
 ② 보통(1): 수시·정기평가 계획이 실시계획서(매뉴얼)에 반영이 되어있으나 계획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③ 미흡(0): 수시·정기평가 계획이 실시계획서(매뉴얼)에 반영이 되지 않고 평가도 실시되지 않음

5. 기록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유지·관리	1	0.5	0

- ① 우수(1):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고 있음
 ② 보통(0.5):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나 3년간 보존하고 있지 않음
 ③ 미흡(0):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보존·관리하지 않음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

1. 계획대비 이행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당초계획 대비 이행정도	3	1.5	0

- ① 우수(3): 당초 계획대비 이행도 90%이상 또는 사업장 상황을 고려한 개선정도가 뚜렷함
 ② 보통(1.5): 당초 계획대비 이행도 70% - 89% 또는 사업장 상황을 고려한 개선
 ③ 미흡(0): 당초 계획대비 이행도 70%미만 또는 개선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음

2. 도급관련 법규의 준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순회 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법규 준수 정도	2	1	0

- ① 우수(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제62조),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하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의 법규(제58조),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협의체 구성·운영(제64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상(제72조) 등의 법규준수 적정
 ② 보통(1): 도급관련 법규준수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였으나 기록의 일부를 누락
 ③ 미흡(0): 객관적인 법규 준수 내용의 결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법 제62조) 】

-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발생시 작업 중지·재개 (법 51조, 54조) ⇨ 보고체계, 처리절차, 매뉴얼(시나리오)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 (법 64조)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협약조정 (법 72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 인증품사용 확인, 안전검사 주기관리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법 36조)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64조)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급 사업주 및 그의 수급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합동 안전보건점검 ⇨ 정기 또는 수시로 하청 대표 및 근로자가 함께 참여
- 수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채용 시, 정기, 특별교육 등
- 작업환경측정
- 위험작업 시 경보운영 및 운영사항 통보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재, 폭발, 추락 위험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 화학물질 등 취급설비에서 행하는 작업을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정보 사전 제공 등 필요조치
- 수급인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 법 또는 명령 위반 시 시정하도록 필요 조치 ⇨ 체계 유무, 조치 및 이행확인 여부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법 제72조) 】 건설업, 조선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9-64호)

- 일반건설공사 (갑) :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일반건설공사 (을)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중건설공사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 조경, 택지조성, 포장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3.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축 노력정도	5	3	0

- ① 우수(5): 매월 「4·4·4 안전점검」*, Fatal-4** 예방 슬로건 게시, 교육 등을 통해 사고사망 감축 노력이 적정
- ② 보통(3): 「4·4·4 안전점검」, Fatal-4 예방 슬로건 게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안전점검을 일부 누락 또는 슬로건 게시 미실시
- ③ 미흡(0):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축노력이 없음

* 기본 안전점검(4일), 추락예방 점검(14일), 끼임예방 점검(24일)

* Fatal-4(4대 악성 사고사망 재해) : 추락, 끼임, 충돌, 질식에 의한 사고사망 재해

4. 만족도 조사 및 환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4	2	0

- ① 우수(4): 협력업체가 대표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수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만족도 조사(3) 및 조사 결과 분석치를 제시(1)
- ② 보통(2): 협력업체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필수 조사내용 중, 일부를 누락
- ③ 미흡(0):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없음

* 필수 조사내용 : ①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②위험성평가 지원 만족도, ③유해위험요인 개선지원 만족도 및 ①~③의 불만족 요인 조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3	1.5	0

- ① 우수(3): 협력업체가 비용 부담을 지지 않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짐
- ② 보통(1.5): 협력업체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③ 미흡(0): 협력업체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

* 선언내용, 세부계획, 개선결과 등 확인 후 협력업체 비용부담이 없는 것이 확인 된 경우

E.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

1.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참여협력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 ^{**}	16	12	8	4	0

- ① 우수(16): 참여 협력업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이 40%이상
 (12): 참여 협력업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이 30%이상 40%미만
 ② 보통(8): 참여 협력업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이 20%이상 30%미만
 (4): 참여 협력업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이 10%이상 20%미만
 ③ 미흡(0): 참여 협력업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비율이 10%미만

* KOSHA-MS(18001), ISO45001

** 비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협력업체 수 ÷ 당해연도 공생참여 협력업체 수×100

(※ 단, 이전 연도에 이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아 당해연도 11월 30일 기준 유지중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산정)

2.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 재해수준	10	5	0

- ① 우수(10): 참여모기업 대비 협력업체의 재해율이 80% 미만이거나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해가 없는 경우
 ② 보통(5): 참여모기업 대비 협력업체의 재해율이 80% 이상 110% 미만이거나 재해가 미발생한 모기업의 협력업체 재해율이 0.3 미만인 경우
 ③ 미흡(0): 참여모기업 대비 협력업체의 재해율이 110% 이상이거나 재해가 미발생한 모기업의 협력업체 재해율이 0.3 이상인 경우

* (협력업체 재해율 / 모기업 재해율) × 100

※ 단, 우수·보통에서 모기업 재해율이 모기업이 속한 대업종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할 경우 취득점수에 4점을 감점

※ (적용 재해) 11월 30일 확인되는 확정 통계재해자리스트 중에서 2021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
 단,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대회 재해 제외

※ (적용 통계) 11월 30일 공단 ERP에서 확인되는 확정통계 적용 (2021년 발생)

구 분	우수	불량
2. 참여 협력업체의 당해연도 사고사망 발생 여부 (감점)	0	산식적용

- ① 우수(0): 당해연도 참여 협력업체 업무상 사고사망이 발생하지 않음
 ② 불량(-15): 당해연도 참여 협력업체에 발생한 Fatal-4^{*}에 의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1명 당 15점 감점
 (-10): 당해연도 참여 협력업체에 발생한 Fatal-4 이외의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 1명 당 10점 감점

* Fatal-4(4대 악성 사고사망 재해) : 추락, 끼임, 충돌, 질식에 의한 사고사망 재해

※ (적용 재해)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기준 (확인 : 신ERP > 안전 > 중대재해조사 > 통계 > 통합)

※ 감점은 Fatal-4에 의한 사고사망자와 이외의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를 합하여 최대 30점까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2021. 1. 26. 공포)

* 요약

중대재해 처벌법은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
-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주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주요내용



중대재해란?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제2조(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어떤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이 있을까?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처벌내용은?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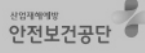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제3조(적용범위), 부칙 제1조(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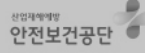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1. 26. 공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재해정의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처벌수준	○ 자연인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산업현장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 추락위험 방지조치

1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2 개구부 덮개 및 경고표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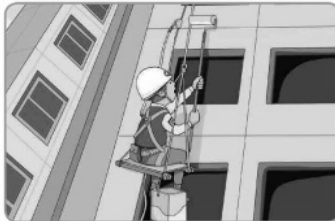
3 추락방호망 설치



4 지붕 위 작업 시 작업발판 등 설치



5 달비계 작업 시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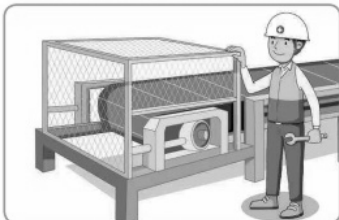


6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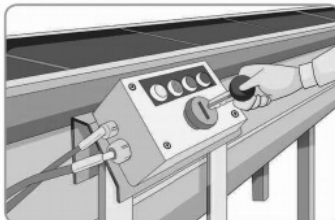


☑ 끼임위험 방지조치

1 원동기, 회전축 등에 덮개, 울 등 설치



2 정비, 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3 기동장치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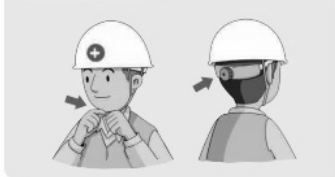


☑ 필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상시점검

1 안전대



2 안전모



3 안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 지급 등)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 지급·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급박한 위험상황 **NO**라고 외치세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명확화됩니다!

이전

산업재해 발생 위험

↓
근로자 작업중지/긴급 대피 시
상급자에게 보고

↓
상급자의 조치

개정

산업재해 발생 위험

STOP

↓
근로자 즉시 작업중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법령 요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폭/발/사/고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동요령

1 폭발사고란?

- 물질의 상태변화(고체, 액체, 기체) 등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적인 연소현상을 말함.
[물리적 폭발] 증기폭발(갑압), 수증기폭발, 전선(도선)폭발, 압력폭발(가압)
[화학적 폭발] 분해폭발, 분진폭발, 중합폭발, 분해·중합폭발, 산화폭발, 촉매폭발

행동요령

2 사고대비 훈련은?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고발생 시 연락방법,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소방, 경찰, 지자체 등과 훈련합니다.
-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 관련 비상집결지를 정하고, 인원파악 방법 등을 훈련합니다.

행동요령

3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 사고가 발생하면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추가적인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 안전취약계층(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시 파악하여 동료 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 가능하도록 합니다.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하여 비상연락망 가동 및 대피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합니다.

행동요령

4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특히,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에 대하여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행동요령

5 폭발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 공급을 차단합니다.
-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행동요령

6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지청), 안전보건공단 등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고수습 후에는 목욕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화/학/적/인/자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동요령

1 화학적인자란?

- 누출 또는 화재·폭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줄수 있는 화학물질

행동요령

2 사고대비 훈련은?

- 사업장 인근 취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고발생 시 연락방법,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소방, 경찰, 지자체 등과 훈련합니다.
-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 관련 비상집결지를 정하고, 인원파악 방법 등을 훈련합니다.

행동요령

3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 사고가 발생하면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 안전취약계층(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상 파악하여 동료 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 가능하도록 합니다.
- 사업장 인근 취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하여 비상연락망 가동 및 대피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합니다.

행동요령

4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부(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특히,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에 대하여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행동요령

5 화학적인자에 의한 급성중독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하며, 발생원(또는 누출원)을 찾아 신속히 차단합니다.
- 사고발생 장소는 발생원을 제거 또는 제독하기 전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물질 제거작업 완료후에는 반드시 농도를 측정하여 제거여부를 확인합니다.



행동요령

6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등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고수습 후에는 목욕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산/소/결/핍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동요령

1 산소결핍이란?

- 공기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밀폐공간(한 면만 개방되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은 유해가스 발생에 따라 산소농도가 낮아져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위험

행동요령

2 밀폐공간 내 출입요령?

- 밀폐공간 내 출입 시 작업공간 외부에는 작업중임을 표시하며,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후 출입하며, (작업 중) 산소농도를 수시 측정하며, 환기를 실시한다.
-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수직구명줄 설치 및 벨트 착용, 공기호흡기를 준비한다.
- 밀폐공간 외부에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출입구에 작업기간, 내용, 연락처 등을 게시합니다.

행동요령

3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행동요령

4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사고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119나 회사 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합니다.
- 구조를 위해 긴급히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조치 및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이외는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밀폐 공간 밖에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행동요령

5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인명구조 시 호흡유무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구/조/물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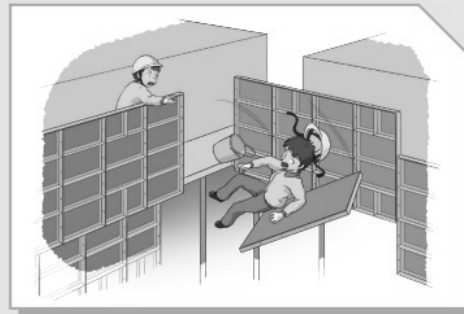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동요령

1 건설현장 구조물 붕괴란?

-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은 크게 아파트, 빌딩, 교량 등 본구조물과 본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 구분됩니다.
- 특히, 가설구조물 붕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거푸집동바리 붕괴, 흙막이·토사 붕괴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 본구조물 붕괴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오래된 건물을 해체하거나, 인접해 있는 굴착공사 현장의 영향으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행동요령

2 붕괴사고 발생 대비 그리고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하나요?

- 구조물 붕괴사고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징후를 최대한 빨리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동·보 등의 주요 구조물 균열발생 등 사전징후 포착 즉시 구조물 내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 구조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현장 내 작업인원 및 대피인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매몰자 현황을 파악하며, 추가 붕괴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동요령

3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설현장 붕괴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합니다.
- 언제, 어디서, 무엇이 붕괴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인원 및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조/물 붕괴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동요령

4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 건설현장 구조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장소(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해당 기관에 신고합니다.
- 사고현장에서 대피 시 붕괴된 자재·파편 등을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조심해서 대피 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린 후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동료작업자 등이 매몰되어 구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차 붕괴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불리 구조하러 사고현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응급구조팀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린 후 도착하면 사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 공사장 밖에 있는 근로자 및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현장에 접근치 않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행동요령

5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지청), 안전보건공단 등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경찰관, 소방관 등의 유도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있을 경우 대피하는 것을 도와 압사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후에는 건강상태 확인, 오염물 세척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사/고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동요령

1 화재사고란?

- 사업장 내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됨
 - 위험물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고체
 - 점화원 : 용접불티, 용단불티, 전기합선, 연마·절단작업에 따른 마찰열 및 스파크 등

행동요령

2 주요 기인물질별 사고 발생형태는?

- 인화성 물질 및 우레탄 등 단열재
 -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체류할 수 있는 용기·배관 또는 밀폐공간 인근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불티가 유증기 등에 착화
 - 샌드위치 패널, 우레탄 등 단열재에 용접·용단 불꽃이 튀어 축열·발화
 - 발포우레탄 뿔칠작업장소 인근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착화
- 기타 발화재
 - 용접·용단 불꽃이 비산하여 가연물(자재, 유류가 묻은 작업복 등에 착화
 -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공기 대신 산소를 사용하여 산소에 발화

행동요령

3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나요?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호각을 부는 등 주변에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사업장에 사고를 전파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을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하여 비상연락망 가동 및 대피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합니다.

행동요령

4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행동요령

4 화재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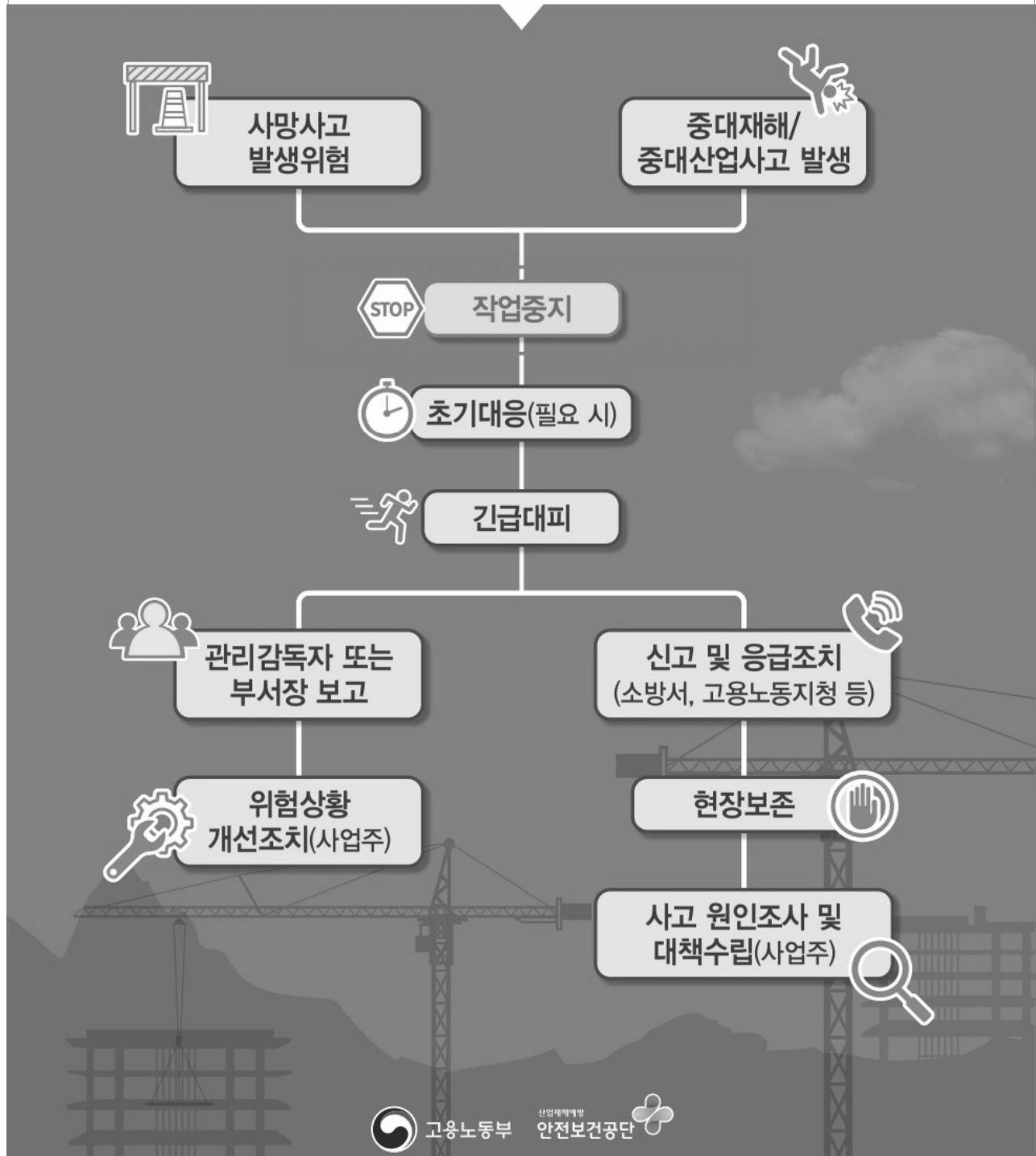
-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다만, 초기소화가 힘든 경우 즉시 대피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화재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행동요령

5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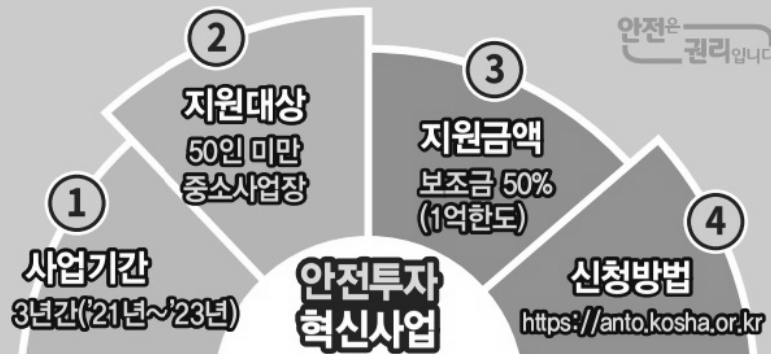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사망사고 발생(위험)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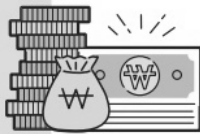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은 권리입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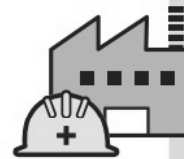
안전투자 혁신사업이란?

-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 ※ 3년간 9,084억원 ('21년 : 3,271억)



지원대상은?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中
- ① 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 * '09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이동식크레인
 - ✓ '09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 권동식 리프트
- ② 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처리업 중심)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2

3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험기계 교체 또는 노후공정 개선소요비용의 50%(1억 한도)

지원방식은?

-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을 지원



신청방법은?

- 온라인(<https://anto.kosha.or.kr>) 신청



문의처 : 1644-4555



사업절차는?



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임직원 모두는 **안전은 권리**라는 인식하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공단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사업총괄본부-40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자료

발행일	2021년 2월
발행인	박 두 용
발행처	안전보건공단
총 괄	사업총괄본부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전 화	052) 703-0632
팩 스	052) 703-0316